

공개청구정보 및 결정내역

안녕하세요.

법무부 난민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접수번호 : 10132796

□ 청구정보 : 난민재신청자 현황 및 난민재신청자 체류허가제한 정책
현황 질의

1. 난민재신청자 관련 현황

- 가.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재신청한 숫자(이하 '난민재신청자' 라 합니다)
(2018. 1. -현재)
- 나.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숫자 (2018. 1. - 현재)
- 다. 위 가. 나. 외국인 중 난민인정자 숫자 (2018. 1. - 현재)
- 라. 위 가. 나. 외국인 중 인도적체류자 숫자 (2018. 1. - 현재)
- 마. 위 가. 나. 외국인 중 체류자격을 부여/ 연장해 준 건수 (2018. 1. - 현재)

2. 난민재신청자,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체류허가 제한 심사대상자로 처리한 지침 관련

- 가. 위 정책의 최초 시행시기
- 나. 위 정책의 시행배경

3. 2022년 9월 지침의 개정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 체류허가 제한심사 대상에 포함

- 가.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여부의 판단 시점
- 나.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여부의 판단 주체
- 다.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 라. 위 지침에 의거하여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인정된 건수

4. 2022년 6월 난민재신청자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최소한 생존을 위해
취업허가를 보장하라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에 대한 입장, 개선 계획

□ 결정 내역 : 부분공개(부존재 포함)

1. 난민재신청자 관련 현황

가. 2018. 1. ~ 2022. 11. 30. 난민 재신청 현황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1월
건수	1,173	797	1,521	1,046	1,715

나. 2018. 1. ~ 2022. 11. 30.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입박하여 난민인정 신청한 현황 : 부존재

다. (가), (나) 중 난민인정 현황 : 부존재

라. (가), (나) 중 인도적 체류허가 현황 : 부존재

마. (가), (나) 중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건수 : 부존재

2. 난민재신청,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입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체류허가 제한 심사대상자로 처리한 지침 관련

가. 최초 도입 시기

-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에 대한 체류허가 기준 : 2015년 4월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기준 : 2016년 7월

나. 도입 배경

- 「난민법」 시행 이후 매년 난민신청(재신청 포함)은 급증하였고, 난민심사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난민심사 관련 절차가 장기화되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신청자들이 제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음
- 특히 최종 불인정 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난민신청을 반복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기존 체류자격의 체류허가 요건 미비에 따라 체류·취업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

또한 증가함에 따라 「난민법」 등을 고려하여 난민신청자에 대한 G-1 체류 자격 부여,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체류허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3. 2022년 9월 지침의 개정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의 체류허가 제한심사 관련

가. 중대한 사정 변경 여부의 판단 시점 : 난민재신청 및 체류허가 신청 접수 시

나. 중대한 사정 변경 여부의 판단 주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다. 중대한 사정 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 비공개

- 해당 사항은 공개 시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난민인정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

라. 위 지침에 의거하여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인정된 건수 : 부존재

4. 2022년 6월 난민재신청자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최소한 생존을 위해 취업허가를 보장하라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에 대한 입장, 개선 계획

- '22. 6월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무분별한 재신청 허용에 따른 부작용이 문제되고 있어 해당 사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